

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 
		보도	배포 후 즉시	

기 관	책 임 자	담 당 자
금융위원회	공정시장과장 박재훈(02-2100-2680)	심원태 사무관(2688)
	기업회계팀장 송병관(02-2100-2690)	차영호 사무관(2692)
금융감독원	회계심사국장 김은조(02-3145-7700)	김철호 부국장(7702)
	회계관리국장 박형준(02-3145-7750)	김세동 팀 장(7752)
	공시심사실장 민경찬(02-3145-8420)	황승기 부국장(8422)
한국거래소	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송영훈(02-3774-8505)	황우경 부 장(8730)
	코스닥시장 본부장보 채현주(02-3774-9502)	강병국 부 장(9800) 이승한 부 장(8610)
	연구교육이사 조연주(02-3149-0331)	이재연 팀 장(0171)

제 목 :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

◆ **증권선물위원회**는 3.24.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**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**에 대하여 과징금 등 **행정제재를 면제**

1. 그간의 경과

□ 금융위원회는 지난 2.24. **코로나19** 영향으로 재무제표(연결포함)·감사보고서·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*를 면제한다는 방침**을 발표하였습니다.

*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,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,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

**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·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「**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**」

○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(3.8.~3.12.)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**회사·감사인**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.

2.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

- 총 16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. (19개사 신청서 제출, 3개사 신청 자진철회)
 -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·종속회사 등이 중국·홍콩(8사)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,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.
-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(신청서, 의견서 등)를 확인하였으며,
 -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,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.

3.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

- 증권선물위원회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.
 -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*이며, 3사는 비상장사입니다.
 - * 코스닥시장 8사, 코넥스시장 4사
 -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,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개사로,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*하였습니다.
 - *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원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.31.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-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(13개사) 및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(5.17.)까지(주권상장 외국 법인은 5.31.)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*해야 합니다.

*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(2개사)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(4.30일)에서 45일 연장된 6.14.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

- **감사 전 재무제표**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(3개사)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**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**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 제재 면제요건 등 충족 현황 >

(단위: 개사)

위반 항목		법인 구분	회사 수	합계	연장된 제출 기한
회사	감사 전 재무제표	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등	1	3*	5.17.
		K-IFRS 미적용 & 연결	2		6.14.
	사업보고서	내국법인	9	13*	3.31. → 5.17.
		외국법인	4		4.30. → 5.31.
감사인	감사보고서	사업보고서 제출대상	9	11**	3.31. → 5.17.
		K-IFRS 미적용 & 연결	2		4.30. → 6.14.

* 15사 제재면제 → 1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모두 제출지연(13+3-1=15)

** 10개 감사인 제재면제 → 외국법인(4사)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(15-4=11), 감사인 1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2곳의 감사인(11-1=10)

-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,

-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,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가회·속회에서는 '20.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를 제공(2주전 통지·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·홈페이지 게재)해야 합니다.

붙임

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

※ ○ : 제출의무 위반, △ :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, 시장구분-신청일 順

No	회사명	감사인 (회계법인)	회사		감사인	면제 여부	제출 기한
			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여부	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	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		

(코스닥시장 상장)

1	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	대주		△		면제	5/31
2	(주)소리바다	예일		△	△	면제	5/17
3	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	인덕		△		면제	5/31
4	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	신한		△		면제	5/31
5	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	신한		△		면제	5/31
6	(주)이엠네트웍스	삼덕		△	△	면제	5/17
7	(주)에코마이스터	다산		△	△	면제	5/17
8	아이엠이연이(주)	대주		△	△	면제	5/17

(코넥스시장 상장)

9	(주)애드바이오텍	이정		△	△	면제	5/17
10	명진홀딩스(주)	현대		△	△	면제	5/17
11	(주)휴백셀	이춘		△	△	면제	5/17
12	선바이오(주)	정인		△	△	면제	5/17

(사업보고서 제출 대상)

13	(주)엠비아이	한울	○	△	○	면제	5/17
----	---------	----	---	---	---	----	------

(기타 외부감사 대상)

14	(주)비전랜드	한신	△		△	면제	6/14
15	아이엠이파트너스(주)	대주	△		△	면제	6/14
합계			3	13	11	-	-

 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